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승인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될 수 있으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5.07월 중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98-2번지 일대(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AA32BL)
-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15층 / 11개동 / 총 6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 주택형 : 64㎡A/B/C/D, 84㎡A/B/C/D/E/F, 98㎡A/B/C, 110㎡S/P

2. 분양일정 (예정)

구분	예정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5. 07. 18.(금) [예정]	※추후 재 공지 예정
특별공급 접수	'25. 07. 28.(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25. 08. 05.(화) [예정]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청약홈 개별조회)

※ 서류접수 기간, 정당계약 체결일 등 공급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PC·모바일)접수 : 특별공급 청약일 09:00~17:30까지

※ 특별공급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현장접수 : 특별공급 청약일 10:00~14:00까지(방문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본사항

구분	내용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입주자 저축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철거민(이주대책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 입주자저축 예치기준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인천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예금</td> <td>850 이상</td> <td>250 이상</td> <td>200만 원</td> </tr> <tr> <td>※ 청약부금</td> <td>250 이상</td> <td>300만 원</td> <td>200만 원</td> </tr> </tbody> </table> <p>※ 청약예금 850 이상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 200만 원</p>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 청약예금	850 이상	250 이상	200만 원	※ 청약부금	250 이상	300만 원	200만 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 청약예금	850 이상	250 이상	200만 원										
※ 청약부금	250 이상	300만 원	200만 원										

■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의 경우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을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을 총종하여야 할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하여 주택기준으로 등록하고 세대원 2인 이상인 세대에는 중복하여 신청
 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
 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table border="1"> <tr>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abl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엘리프 검단 포레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3/4]

5.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써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입주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써 청약하여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입주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불가, 당첨제한 적용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복인 확인)

6.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④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⑥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⑦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⑧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⑩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⑪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⑫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⑬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⑭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⑮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⑯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⑰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⑱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⑲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⑳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㉑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㉒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㉓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㉔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㉕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㉖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㉗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㉘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㉙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㉚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㉛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㉝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㉞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㉟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㊱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㊲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㊳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㊴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㊵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3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㊶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㊷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㊹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㊺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㊻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㊼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㊽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㊾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㊿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4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㉈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㉉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5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㊱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㊲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㊳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㊴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㊵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㊶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㊷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㊹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6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㊺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㊻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㊼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㊽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㊾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㊿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7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㉈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㉉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㊱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㊲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㊳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8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㊴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㊵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㊶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2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㊷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4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㊹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㊺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㊻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㊼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8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㊽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99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㊾ 「장애인복지법」 제24조제1항제100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 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주택형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분양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분양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분양승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선정되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

